

[별표 3]

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

(제3조제3항관련)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전기 안전	무선	유선	SAR
1. 측정·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	시험·측정용 계측설비류 (오실로스코프, 전계강도측정기, 스펙트럼분석기, 네트워크분석기 등)	○				
	휴대용 자동차진단기	○				
2. 산업·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(※ “산업용”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.)	산업용컴퓨터	○	○			
	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플랜트설비	○				
3.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	전자식 운행기록계	○				
	주차차단 제어장치	○				
4.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	유선통신 단말 및 전 송 망 기자재류	콘넥터			○	
		분기기			○	
		분배기			○	
		동축케이블			○	
		보호기			○	
		광분기기			○	
		광분배기			○	
		광케이블			○	
	직렬단자			○		
	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	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	○			○
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		○			○	
5. 전기철도기기류 : 전기철도차량, 전원장치,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,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,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		○				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소장이 인정하는 기자재		○				